

2022년 학자금지원(국가·근로·우수·학자금대출) 기본계획 주요내용

1 사업 개요

- (목적) 청년층 등에 대한 실질적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 및 우수한 미래인재로의 도약을 지원, 학생 중심의 학자금지원 기반 마련
- ⇒ 학자금지원이 절실한 학생의 고등교육비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,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- ('22년 예산) 총 4조 6,748억원(+6,587억원) ※ 사업운영비는 제외

- ❖ (국가장학금 : 4조 1,326억원) 학자금지원 5~8구간·기초차상위·8구간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한 지원단가 상승으로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약 6,495억 원 증가
- ❖ (근로·우수장학금 : 4,022억원) 근로장학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교내근로 시급단가 인상(9,000원→9,160원), 우수장학금은 지원인원 확대(4,403명→4,947명)로 예산 증가
- ❖ (학자금대출 : 1,400억원) 국가장학금 확대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,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과 ICL 제도개선 사항* 반영 등에 따른 예산 규모 증가

* 대학원생 ICL 도입, 저소득·다자녀 가구 대학생 재학 중 이자면제 등

- (지원근거)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(장학제도 등)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국가의 책무)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4조(국가의 책무)

2 '21년 주요성과

- (다각적 지원) 국가장학금 100.9만명에 3조 3,441억원, 근로장학금 12만 명, 우수장학금 4,284명 및 학자금대출 56.4만명에 1조 6,563억원 지원
- (배려계층 보호) 실직·폐업을 겪은 일반상환대출자에 3년간 상환유예, 사망·심신장애 296명에 채무감면, 자립준비청년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우선 지원
- (선제적 제도개선) 법률 개정을 통한 학자금 대출의 지원 확대 기반 마련, 신용회복위원회와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대학의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 추진

③ ('22년 중점 추진) 체감가능한 학자금 지원 확대

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

- (지원금액 인상)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높여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
 - ※ 기초·차상위 가정의 첫째 700만원, 둘째는 등록금 전액 지원, 학자금지원 5~6구간 368 → 390만원, 7~8구간 120·67.5만원 → 350만원,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
- (사각지대 발굴) 국가장학금 II유형을 학자금지원 9구간(기존 8구간)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, 사회적 취약 계층*을 우선지원
 - * 심터 입퇴소 청소년, 청소년 한부모 ('21.7월 및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)
- (자녀수에 따른 경제수준 반영)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 공제 적용 ※ 약 24만 명의 신청자에 지원 확대

②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

- (ICL 지원 확대)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*까지 확대하고, 성적기준 (C학점 이상) 폐지 및 취약계층에 재학 중 발생이자 전액 면제**
 - *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및 만 40세 이하인 학생으로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인 자에게 등록금(석사 6천만원, 박사 9천만원 한도 내) 및 생활비 대출(연 300만원) 지원
 - ** (등록금·생활비 대출) 기초·차상위, 다자녀 (생활비 대출) 4구간 이하 학생
- (취약계층 보호) 금융권·학자금 대출 채무를 모두 보유중인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*을 시행('22.1.)하고, ICL 연체부담 완화**
 - * 신용회복위원회 주관, 연체 3개월 이상 채권에 대해 원금 최대 30% 및 연체이자 전부감면 등
 - ** (연체금 한도) 상환고지금액의 9% → 5%, (가산금요일) 매월(월할) 1.2% → 매일(일할) 0.01%
- (상환부담 경감) '10년~'12년 일반학자금대출자*에게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시행('22.하)하고,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 마련**
 - * 3.9~5.7%의 고정금리 적용
 - ** 「장학재단법」상 고등교육기관에 '학점은행제 운영기관'이 포함('21.12.2.개정, '22.12.29.시행), '22년 정책 연구 등을 거쳐 제도 마련 및 '23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

③ 우수·근로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

- (우수인재 지원강화) 인문·사회, 예술·체육 분야의 우수 장학금 지원인원을 늘리고, 생활비 지원액도 전년 대비 50만원 인상

※ (지원인원) 인문100년장학금 3,773명(+369), 예술·체육비전장학금 1,051명(+171)
(생활비) 등록금 전액·생활비를 지원하는 I유형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생활비를 200만원 →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두텁게 지원

- (근로장학 취업연계 강화)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과 관련된 근로기관에서 충분히 근로할 수 있도록 교외근로기관 발굴 강화

※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기관 확보 및 대학의 신규 근로기관 발굴 실적을 사업비 배정시 반영

④ ('22년 준비) 국가장학체제 기반 마련

① 인재양성·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지원체제 개선

- (전달 체계 개편) 학령인구 감소, 인재양성·고등교육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고,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한 학자금 전달 체계* 개선 검토

* 정부장학금과 대학의 교내외장학금 간의 연계 강화 등

- (학자금지원구간 개선)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고, 지원구간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(안) 마련 및 도입

② 장학·대출 등 정부 학자금 지원의 통합관리 지원체제 구축

- (근거법률 마련) 장학·대출 등에 관한 주요내용(지원유형·절차·사후 관리 등)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

- (범부처 통합 지원) '학생' 중심의 촘촘한 학자금지원을 운영하고자 부처별 학자금 지원제도를 파악 및 상호 보완을 위한 연계방안 등 모색

③ 중앙·지방정부-공공기관-민간 및 대학의 학자금지원 협업체계 구축

- (단기 : 정보공유) 정부·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대학의 학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신화 기제 마련하여 학생의 알권리 확충

- (중장기 : 통합 지원시스템) 학자금 신청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정부~민간의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시스템 구축